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20가단50741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임부영

피 고 1. A

2. B

변론 종결 2020. 10. 30.

판결 선고 2021. 1. 29.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914,011원 및 그 중 19,806,705원에 대하여 2020. 3. 6.부터 2020. 3. 19.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B은 피고 A에게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9.12. 30. 접수 제333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2.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C은행에 부담할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2018. 2. 1.부터 연 10%이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조치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은 같은 날 위 약정을 이용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9.12. 3. 보증사고(원금 연체)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20. 3. 6. 19,831,78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20. 3. 6. 대위변제금 중 25,082원을 회수하였고, 위 금액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은 6원이다. 또한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조치비용은 1,107,300원(이 사건 소송비용도 포함됨)이다.

라. 한편 피고 A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30. 피고B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원고에게 합계20,914,011원(= 대위변제금 19,806,705원(= 19,831,787원 - 회수금 25,082원) + 확정지연손해금 6원 + 비용 1,107,3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9,806,70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3.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0. 3. 19.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은, D기관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에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결국 원고가 2020. 3. 6. 피고 A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2) 갑 제9,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피고 A은 적극재산으로는 유일하게 시가 8,200만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 채무(채권최고액 5,760만 원),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채무(2020. 3.경 기준 원금 합계 49,944,459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 B은, 피고 A이 자금난으로 사업(건강식품 판매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부득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2017. 8. 23.경부터 2018. 2. 23.경까지 피고 A에게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피고 A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대여금 채권 확보를 위해 2019. 12. 30. 비로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것인바, 피고 A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B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경

별지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사천시 동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스라브지붕 지상15층 공동주택(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59.363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상남도 사천시 대 44874㎡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44874분의41.20295